

예산총칙

200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6,058,204	6,181,746
일반회계	199,957,121	5,998,714
특별회계	6,101,083	183,032
기타특별회계	6,101,083	183,0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24,338	39,73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71,604	41,14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4,480	18,134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608,348	18,25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70,000	17,100
주택사업특별회계	80,000	2,40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1,002,000	30,06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7,726	1,132
간척사업특별회계	70,086	2,103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52,500	10,575
기반시설특별회계	80,001	2,4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36,953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